

의안번호	2219554
의 퇴 인	이강일의원
회 답 일	2026. 9. 3.
추계번호	26B3499

역사문화 거점 원도심 활성화 및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역사문화 거점 원도심 활성화 및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역사문화 거점 원도심 활성화 위원회’를 둘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5억 2,700만원(연평균 1억 500만원)으로 추계됨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5조)	426	—	—	—	—	426	85
원도심 활성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안 제16조)	14	22	22	22	22	101	20
합 계	440	22	22	22	22	527	105

주: 1. 역사문화 거점 원도심 활성화 위원회의 경우, 추계기간 첫째인 2027년에는 제정안 시행일 및 사업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하반기부터 위원회를 운영하여 연 2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함

2.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방법 및 금액, 실제 회의 개최 횟수 및 회의참석 사례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에 따른 원도심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역사문화 거점 원도심 활성화 및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제1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안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분야 또는 관할 지역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1항)	의무규정
3	안 제9조(기존 건축물의 활용 및 지원)	이전공공기관이 원도심 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활용하는 경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제1항) 1. 유휴 공공청사 2. 폐교된 학교시설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문화재 또는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재량규정
4	안 제10조(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활용 특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원도심 내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이전공공기관 또는 원도심 활성화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원도심 내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이전공공기관 또는 원도심 활성화사업의 시행자에게 50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80까지를 감면할 수 있다.(제2항)	재량규정
5	안 제12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원도심 활성화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의 입주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원도심 활성화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2항)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료·사용료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4.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7.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재량규정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8.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9. 「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10.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1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12. 그 밖에 원도심 활성화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원도심 활성화사업에 따라 건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3항)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한방병원 또는 종합병원 3.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건물 4. 그 밖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원도심 정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재량·의무 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주기업에 용지매입비 용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의 지역개발 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제4항)	재량규정
6	안 제13조(주차 인프라 구축 지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원도심의 주차난 해소와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구축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1항) 1. 공공 통합주차타워 2. 스마트 주차관리시스템 3. 그 밖에 주차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재량규정
7	안 제14조(교육 및 문화 환경 조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원도심 내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제4항) 1.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지구의 지정·관리 및 생활문화센터의 설치·운영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건립 및 운영 3. 그 밖에 역사문화자원의 보존·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재량규정
8	안 제15조(재원의 조달 및 지원)	국가는 원도심 활성화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제1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원도심 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도심활성화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제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원도심 활성화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제4항)	
9	안 제16조(원도심 활성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원도심 활성화 및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역사문화 거점 원도심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제1항)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원도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 대상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및 배분에 관한 사항 5.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의무규정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제2항)	의무규정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제3항) 1. 재정경제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원도심 활성화 및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의무규정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제4항)	재량규정
10	안 제17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제3항)	재량규정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항)	재량규정
11	안 제1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제2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2	안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	•미대상 — 제정안은 시·도지사 등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을 토대로 별도의 연구용역 없이 지방자치단체 등 자체 인력으로 수립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임						
3	안 제9조(기존 건축물의 활용 및 지원)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전공공기관의 기존 건축물 활용, 국·공유재산 활용 특례, 원도심의 주차 인프라 구축, 원도심의 역사문화자원 활용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역사문화 거점 원도심 활성화 및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지원 대상과 구체적 지원 내용이 특정될 예정이므로, 현지점에서는 재정추계를 위한 기초정보가 불확정적이어서,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원 사업을 통하여 원도심 등 낙후된 지역의 기반 시설 확충 등을 지원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4	안 제10조(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활용 특례)								
5	안 제13조(주차 인프라 구축 지원)								
6	안 제14조(교육 및 문화 환경 조성)								
			<table><tr><th>사업명</th><th>사업 내용</th><th>2026</th></tr><tr><td>재정비 촉진지원</td><td>재정비촉진지구내 광역적 기반시설 설치(도로·공원·주차장)를 촉진하여 생활권 단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제고</td><td>3,831</td></tr></table>	사업명	사업 내용	2026	재정비 촉진지원	재정비촉진지구내 광역적 기반시설 설치(도로·공원·주차장)를 촉진하여 생활권 단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제고	3,831
사업명	사업 내용	2026							
재정비 촉진지원	재정비촉진지구내 광역적 기반시설 설치(도로·공원·주차장)를 촉진하여 생활권 단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제고	3,831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7	안 제12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원도심 활성화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 입주기업 등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감소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지원대상, 감면 범위와 금액 등이 확정되지 않아, 현시점에서는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8	안 제15조(재원의 조달 및 지원)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도심 활성화사업을 위한 경비 지원, 원도심활성화기금 설치·운용, 민간투자사업 추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원도심 활성화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비의 내용 및 규모, 기금의 용도 및 재원의 규모, 민간투자사업의 내용 및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현시점에서는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9	안 제16조(원도심 활성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 다만, 제정안은 역사문화 거점 원도심 활성화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무위원회 구성 여부 및 수, 실무위원회 위원 구성 등을 현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본 추계에서는 제외함
10	안 제17조(위원회의 운영)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역사문화 거점 원도심 활성화 위원회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의견수렴 절차 및 방식, 여비 등 실비 지급 기준 및 금액 등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11	안 제1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정안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업무 위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수탁기관에 위탁할 업무의 범위 및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수탁기관의 인력 및 경비 등의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은 과거 도청 소재지 등 지역 행정·문화의 중심지였던 지역을 역사문화 거점 원도심으로 지정하여 공공기관 이전,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임

※ [참고자료] 광역행정 중심지 예시

-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 다만, 역사문화 거점 원도심 활성화 위원회는 제정안 시행일 및 사업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 첫해인 2027년에는 하반기(연 2회 개최)부터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역사문화 거점 원도심 활성화 및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 제정안에 따른 ‘역사문화 거점 원도심 활성화 및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 수립 비용은 유사사례인 ‘노후계획도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함

[표 2] 유사사례(노후계획도시 정비계획 수립 연구용역)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년도	사업명	실시기관	사업비
2025	2025년도 전국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국토교통부	97
2025	2036년 울산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울산광역시	500
2025	2035 대전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대전광역시	650
2024	2035 부산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부산광역시	787
2024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컨설팅 용역	국토연구원	97
평균			426

자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내용 참조

-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 중 1차년도에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추계 결과) 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4억 2,600만원(연평균 8,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3]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평균
기본계획 수립	426	—	—	—	—	426	85

주: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 실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방법 및 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역사문화 거점 원도심 활성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안 제16조)

- (위원회 구성) 제정안에 따른 역사문화 거점 원도심 활성화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제정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위원장(국무총리) 1명, 공무원 위원 5명, 민간 위원 24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정함
 - 제정안은 역사문화 거점 원도심 활성화 위원회를 위원장 1명(국무총리)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되, 위원은 당연직 위원(재정경제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 및 민간 위원(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 위원 중 민간 위원은 24명으로 가정함

[표 4] 위원회의 구성(안)

구 분	위원 수	위원 신분 및 구성
당연직 위원 (위원장, 공무원 위원)	6명	— 국무총리(위원장), 재정경제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민간 위원	24명	— 원도심 활성화 및 공공기관 이전 관련 민간 전문가

자료: 제정안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회의 개최 수) 유사 위원회(도시재생특별위원회¹⁾)의 회의 개최현황을 참고하여 연 3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함
 - 다만, 추계기간 첫해인 2027년에는 하반기부터 위원회를 운영하여 연 2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 (민간위원 회의참석 사례금) 안건 검토비 등을 포함한 회의참석 사례금은 1회 회의 개최 시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함²⁾
 - 이때, 회의참석 사례금은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추계 결과) 제정안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역사문화 거점 원도심 활성화 위원회를 둘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억 100만원(연평균 2,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5] 역사문화 거점 원도심 활성화 위원회 설치·운영에 따른 비용추계: 2027~2031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평균
민간위원 수(A, 명)	24	24	24	24	24	—	—
회의개최 횟수(B, 회)	2	3	3	3	3	—	—
회의참석 사례금(C, 만원/명·회)	30	30	30	30	30	—	—
합 계(D=A×B×C, 백만원)	14	22	22	22	22	101	20

주: 1. 추계기간 첫해인 2027년은 제정안 시행일 및 사업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하반기부터 위원회를 운영하여 연 2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2.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회의개최 횟수 및 회의참석 사례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 도시재생에 관한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최근 1년간(2024.7. ~ 2025.6.) 본 회의 개최 수는 총 3회임

2)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하며,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20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100,000원내에서 집행(기획예산처,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26. 1. p.150.)

IV. 부대의견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방법 및 금액, 실제 회의개최 횟수 및 회의참석 사례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최동완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동완	02-6788-3746	dongwaniii@nabo.go.kr

[참고자료] 광역행정 중심지 예시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도시		도청	과거 권역시설 (관아·읍성 등)	현재 권역시설 (도청·법원·검찰청·경찰청 등)
강원	강릉	-	강릉대도호부 관아, 강릉읍성	강원도청 제2청사
	원주	강원감영(1395~1895), 강원도청(1895~1946)	원주목 관아	-
	춘천	강원도청(1910~)	춘천도후부 관아	강원특별자치도청,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방검찰청, 강원경찰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전라	전주	전라감영(1392~1895), 전북도청(1896~)	전주부 관아, 전주읍성	전주지방법원, 전주지방검찰청, 전북경찰청, 전북특별자치도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나주	-	나주목 관아, 나주읍성	-
	무안 (목포)	전남도청(2005~)	목포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전남경찰청, 전남교육청,
	광주	전남도청(1910~2005) 광주광역시청	광주목 관아, 광주읍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광주지방법원, 광주경찰청, 광주교육청
충청	충주	충청감영(1395~1603), 충북도청(1896~1908)	충주목 관아, 충주읍성	-
	청주	충북도청 (1908~)	청주목 관아, 청주읍성	충북도청,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방검찰청, 충북경찰청, 충북교육청
	대전	충청남도청(1932~2012)	회덕현 관아	대전광역시청, 대전고등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경찰청, 대전고등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대전교육청
	공주	충청감영(1603~1896), 충청남도청(1896~1932)	공주목 관아, 공산성	-

도시		도청	과거 권역시설 (관아·읍성 등)	현재 권역시설 (도청·법원·검찰청·경찰청 등)
경 상	경주	경상감영(조선 전기)	경주부 관아, 경주읍성	-
	상주	경상감영(조선 전기)	상주목 관아, 상주읍성	-
	대구	경상감영 경북도청(1896~2016) 대구광역시청	대구부 관아, 대구읍성	대구광역시청,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대구경찰청, 대구교육청
	안동	경상감영 경북도청(2016~)	안동대도호부 관아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경북교육청
	창원	경남도청(1983~)	창원도호부 관아, 창원읍성	경남도청,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검찰청, 경남경찰청, 경남교육청
	진주	경상우도감영 경남도청(~1925)	진주목 관아, 진주성	-